

#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8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병도, 홍성룡, 송아량, 이정인,  
김화숙, 우형찬, 이영실, 송재혁,  
김동식, 김용연, 김상훈, 유 용,  
김태수, 김제리, 오한아, 정진술,  
성흠제 의원 (17명)

## 1. 제안이유

- 화재나 그 밖의 재난·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, 부상을 입거나 육체적·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.
-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제4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시장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